
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승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2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6. 22.

발 의 자 : 주승용 · 최도자 · 김동철
박주선 · 박광온 · 이춘석
장정숙 · 강창일 · 김관영
이용주 · 박준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으로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러한 사용기한 등을 경과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.

또한,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일만을 기재하고 있어 적정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등 화장품 이용상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외에 개봉 전의 유통기한도 함께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하고, 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화장품 소비자

의 이용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10조, 제15조, 제16조 및 제36조).
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4027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조연월일”을 “제조연월일과 개봉 전 유통기한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9호 중 “제조연월일”을 “제조연월일과 개봉 전 유통기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한이 경과한 화장품

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한이 경과한 화장품

제36조제1항제4호 중 “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”를 “제16조제1항제1호·제4호 또는 제5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) 법률 제14027호 화장품법 일

부개정법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(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. 이하 같다)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제조판매의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.

알선·수여를 포함한다)하거나
판매할 목적으로 제조·수입·보
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
다.

- 1. ~ 8. (생략)
- 9.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
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
간(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
을 포함한다)을 위조·변조한
화장품

<신설>

제16조(판매 등의 금지) ① 누구
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
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
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
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
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.

- 1. ~ 4.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제3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

-----.
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9. -----

-----제조연월일
과 개봉 전 유통기한-----

10.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
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
기한이 경과한 화장품

제16조(판매 등의 금지) ① -----

-----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
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
한이 경과한 화장품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벌칙) ① -----

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

② (생략)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제16조제1항제1호·제4호 또는 제5호-----

② (현행과 같음)